

# 법원도시계획 시설(도로)변경(안) 의견청취의 건

의안  
번호 302

제출년월일 : 1997.

제 출 자 : 파주시장

## □ 제안사유

- 시가지 밀집지역 관통으로 인한 교통의 원활한 흐름유도 및 주민들의 통행에 편리함을 도모하고자
- 대로3-1(법원리 초립골입구~대능5리 소방대)공사시행중 일부 도시계획도로가 군부대 연병장을 통과하여 사업이 불가피한 실정으로
- 관할 군부대와 다각적인 방안으로 협의하였으나 불가되어 사업 구간내 도시계획도로선을 일부변경 추진코자 도시계획법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.

## □ 주요골자

- 도로결정(변경)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					
기정	대로	3	1	25	주간선 도로	2,840	가야리 43번지 (전)	대능리 413번지 (전)	
변경	대로	3	1	25	"	2,902	가야리 43번지 (전)	대능리 413번지 (전)	일부구간 선형변경
기정	중로	1	1	20	"	600	대3-1 대능리 77-1번지(전)	중2-2 대능리457-2번지(대)	
변경	중로	1	1	20	"	612	대3-1 대능리 77-1번지(전)	중2-2 대능리457-4번지(대)	시점부 노선연장
기정	중로	2	3	15	"	1,200	대3-1 대능리 103번지 (전)	중2-1 법원리525-1번지(도)	
변경	중로	2	3	15	"	1,436	대3-2 대능리 250번지 (전)	중2-1 법원리525-1번지(도)	시점부 노선연장

# 법원도시계획시설(도로)변경(안)

## □ 현 황

- 사업명 : 법원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
- 도시계획시설결정
  - 결정고시일 : 1982. 7. 16 (경기도고시 제226호)
  - 시설명 : 대로 3류 1호선 (연장 : 2,840m , 폭원 : 25m)
    - 기점 : 법원읍 가야리 43번지
    - 종점 : 법원읍 법원리 413번지
- 사업개요
  - 위 치 :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(초립골)~대능리(소방대)
  - 사업명 : 연장 1,700m, (폭원25m)
  - 예산확보액 : 5,350백만원

## □ 추진경위

- '93. 12. 24 : 제2회 추경예산 확보(도비 : 1,000백만원)
- '94. 2. 12 : 도로개설에 따른 군부대 협의 (육군제3273부대)
- '94. 3. 2 : 군부대협의 결과 “불가” 회시  
(불가사유 : 군사시설물저촉 및 연병장 부지잠식)
- '94. 3. 9 : 실시설계용역 발주
- '94. 4. 27 : 실시설계용역 완료
- '94. 10. 14 : 군부대 재협의  
(내용 : 군부대 주둔지 일부구간 도로폭조정  
B=25m → B=12m)
- '94. 10. 20 : 재협의결과 “불가” 회시
- '94. 10. : 토지분할의뢰(사업시행 가능지역)
- '96. 5. 15 : 공사발주 (사업시행 가능지역)
- '96. 8. 20 : 군부대 3차협의
  - 군부대 주둔지 도로폭 12.5m
  - 하천제외지 도로폭 12.5m

- '96. 9. 12 : 군부대 3차협의결과 “불가” 회시
  - 포상4동, 유개화 전투시설물 이전
  - 영내 관사이전 (지휘관 1동, 광사 3동)
  - 울타리 시설물 재축성
  - 부대부지 축소로 현휘치에서 업무수행 제한
  - 도로개설로 인한 부대보안 취약점 및 위험요소 산재
- '96. 12. 3 : 도시계획도로변경 공람공고실시 (14일간)
- '97. 1. 27 : 4차 군부대협의 결과 “조건부동의” 회시
  - 조건부동의 내용 : 도로개설시 훼손되는 시설물 (탄약고, 울타리등)을 복구하는 조건으로 동의
- '97. 5. 3 : 경기도 농지전용 협의
- '97. 6. 10 : 경기도 농지전용협의 회시

## □ 변경사유

- 시가지 밀집지역 관통으로 인항 교통의 원활한 흐름유도 및 주민들의 통행에 편리함을 도모하고자
-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경기도시 제226호('82. 7.16)로 결정고시된 대로3-1(법원리 초립플입구~대능리 소방대) 공사시행중 일부 도시계획도로가 군부대 연병장을 통과하여 사업이 불가피한 실정으로
- 관할 군부대와 다각적인 방안으로 협의를 하였으나 불가되어 사업구간내 단위도시계획시설로 변경(선형조정)입안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함.

